

[서식 예]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지방경찰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○○. ○. ○.부터 ○○지방경찰청 ○○경찰서 ○○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, 피고는 원고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에 있는 ☆☆주점의 업주 소외 양□□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20○○. ○. ○. 위 업소가 퇴폐영업으로 단속되자 관할 파출소장인 원고에게 "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"고 청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, 제57조,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



쳐 20○○. ○. ○. 원고를 해임처분 하였습니다.

- 2. 원고는 위 청탁사실은 인정하나, 원고는 ☆☆주점 업주 소외 양□□을 입건 조치하였고,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○○. ○. ○. 경장으로 19○○. ○. ○. 경사로 19○○. ○. ○. 경위로 승진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약 19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치안본부장 표창 2회 충북지방경찰청 표창 5회(이상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경감 이하인 경찰공무원인 원고의 경우 징계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)등을 포함하여 20여회에 걸쳐 각종표창을 받은 사실, 원고는 재직 중인 19○○. ○.경 당시 ○○세의 나이에 ○○대학교를 입학하여 19○○. ○.경 졸업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, 청탁의 결과, 징계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처분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〇〇. 〇. 〇.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징계의결서 1통

1. 갑 제2호증

표창장 7부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납 부 서

1통



2000. 0. 0.

원 고 ㅇ ㅇ ㅇ (인)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